



영국의 슈퍼 인정선(Super-injunction) 사건: 보호와 자유의 경계 위에서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 제한

1. 정부의 가처분 신청과 법원의 판단

2022년 2월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oD)는 정부 내 이메일 송수신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 약 3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는 실수를 하였다. 명단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가족관계, 거주지, 신원 보증인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탈레반 재집권 직후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보에 담겨있거나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자료였다.¹⁾

그러나 국방부는 약 1년 반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023년 8월, 난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단을 확보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결국 국방부는 언론의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파일의 존재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사본이 온라인에 퍼진 뒤였다.

1) 이에 대한 언론 기사는 Joel Gunter & Sean Seddo, (2025, July 15). Thousands of Afghans were moved to UK in secret scheme after data breach,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8zy78787o>; Archie Mitchell, (2025, July 16). Ben Wallace takes 'complete responsibility' for Afghan leak — but refuses to apologise for superinjunction,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ben-wallace-afghan-injunction-john-healey-no-apology-b2789827.html> 참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나 유출 경로를 조사하기에 앞서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조치의 명분은 해당 명단이 공개되면 탈레반이 그것을 활용해 협력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이 위험을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연결된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영국 고등법원 퀸스 벤치의 당직 판사 로빈 놀스(Robin Knowles)는 국방부가 제출한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콘트라 문둠(Contra Mundum)'²⁾ 형식의 슈퍼 인정선(super-injunction)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정보 유출의 내용보다 '유출 사실 자체'가 알려질 경우, 협력자와 가족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정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도, 유출 사실 자체가 적대 조직이 해당 정보를 탐색하고 확보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살해·보복·고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³⁾ 법원은 이러한 위험은 유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험(real and imminent risk)'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국방부는 준비 기간 없이 갑자기 정보가 공개되어 위험이 도래하면, 대상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호 조치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아 일정 기간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⁴⁾ 또한 이러한 강력한 비공개 조치는 언론의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려졌다.⁵⁾

당시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인권법상의 비례성 심사를 통해 인용의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놀스 판사는 영국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을 통해 편입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의 제2조(생명권)와 제3조(고문 금지)의 측면에서 본 사건이 핵심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았다.⁶⁾ 그는 유출 사실이 공개될 경우 물리적 위해뿐 아니라 고문의 위험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이 내포한 위험의 중대성을 인정하였다.⁷⁾

또한 해당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기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부가

2) '콘트라 문둠(Contra Mundum)'은 라틴어로 '세상에 대하여'란 뜻으로,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세적인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Re: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contra mundum brough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Knowles J, KB, 2 September 2023, ruling handed down in private; released in public 15 July 2025), para. 4.

4) Ibid., para. 6.

5) Ibid., para. 7 and 11.

6) Ibid., para. 9.

7) Ibid., paras. 10(i)–(2).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적 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⁸⁾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비공개 조치가 유지될 경우 실질적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Article 10) 제한이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보도를 유예하는 예외적인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금지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 역시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⁹⁾

2. 슈퍼 인정선의 결정

이 사건의 법적 의미는 국방부의 청구를 인용했다는 사실보다, 법원이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원 청구보다 더 강력한 자유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있다. 원래 국방부는 공개 금지 명령의 존재 사실에 대한 공개나 보조 자료 등에 대한 접근 자체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금지 명령의 존재만으로도 유출 사실을 추론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금지 명령 자체도 전면 비공개하도록 하였다.¹⁰⁾

이러한 조치는 명령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의 실체적 사실은 물론이고, 해당 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까지도 완전히 비공개로 묶어 놓았다. 더불어 법원은 보조 자료나 비밀 노트 역시 법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¹¹⁾

이러한 조치는 슈퍼 인정선(super-injunction)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명령의 존재 자체를 공개할 수 없게 하는 이중적 비공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 인정선 하에서는 정보의 보도뿐 아니라 명령의 존재 공개도 금지된다. 그리고 그 효력이 언론사뿐 아니라 제3자인 일반인 전체에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형사·민사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하였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처분이 아닌, 일반적 입법에 준하는 형식과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일상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국방부가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금지 명령을 통지할 때마다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해당 명령을 상시적인 사법 감시 체제에 두어 상황

8) Ibid., para. 10(5)

9) Ibid., paras. 10(6)–10(7).

10) Ibid., para. 13.

11) Ibid., para. 14.

12) Re: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contra mundum brough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KB, Robin Knowles J, 1 September 2023, interim order, Claim No KB–2023–003361).

이 변동될 경우, 국방부가 즉시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슈퍼 인정선이 장기화되어 발생하는 역효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라고 볼 수 있다.¹³⁾

III. 슈퍼 인정선을 둘러싼 위험 평가에 관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견해차

1. Judgement 1, 2: 슈퍼 인정선의 유지

사건은 곧 고등법원의 체임벌린 판사(Mr Justice Chamberlain)에게 이관되었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총 네 차례의 판단을 내렸다. 그는 2023년 11월 23일과 2024년 2월 15일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해 슈퍼 인정선의 효력을 유지하였다.

2023년 11월 23일, 첫 번째 판결에서 체임벌린 판사는 2023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던 슈퍼 인정선의 유지 여부를 비례성 심사¹⁴⁾에 따라 재검토하였다. 그는 영국 국방부가 제출한 위험평가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 위험(real risk)”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즉, 탈레반이 아직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존재가 공개될 경우 탈레반이 이를 확보하려고 나설 위험이 크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생명·신체가 중대한 위해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¹⁴⁾

체임벌린 판사는 문제의 특수성과 핵심이 유출된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 사실의 존재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명령의 존재가 알려지면 언론이나 제3자가 이를 단서로 정보 유출 사실과 협력자들의 재정착 정책 사이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탈레반의 접근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¹⁵⁾ 이러한 판단 아래 체임벌린 판사는 데이터 기밀성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슈퍼 인정선을 해제할 경우, 보호수준을 약화시키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보아, 명령 유지 결정을 내렸다.¹⁶⁾ 다만 그는 이 조치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까지 차단하여 일종의 민주적 “감시의 공백(scrutiny vacuum)”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했다.¹⁷⁾ 그럼에도 그는 예외적인 수준의 위험 상황에서는 일시적 비밀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슈퍼 인정선을 4주간 연장하되 엄격한 재판 일정 관리와 정기적 재검토 의무를 함께 부과하였다.¹⁸⁾

¹³⁾ Re: an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contra mundum brough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Knowles J, KB, 2 September 2023, ruling handed down in private; released in public 15 July 2025), paras. 15–17.

¹⁴⁾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v– Persons Unknown [2023] EWHC 2999 (KB) para. 43.

¹⁵⁾ Ibid., paras. 44–45.

¹⁶⁾ Ibid., paras. 42–45.

¹⁷⁾ Ibid., paras. 35–39.

¹⁸⁾ Ibid., paras. 2, 42–47.



두 번째 판결에서 체임벌린 판사는, 첫 번째 결정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와 정책 상황을 반영해 슈퍼 인정선의 계속 유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였다.¹⁹⁾ 그는 첫 번째 판결 당시 제출된 증거에 기반하여 ‘유출 사실 공개가 탈레반의 접근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기본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내각 차원의 재정착 정책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²⁰⁾ 정부는 유출 정보에 포함된 1만 8천여 명 중 약 200명의 고위험군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이주 경로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천 명 규모의 추가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었다.²¹⁾

이에 따라 체임벌린 판사는 먼저 위험군을 1) 이미 영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한 집단, 2) 재정착이 예정되었으나 아직 이동하지 못한 약 4,000명의 고위험군(정책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행 전 단계), 3) 정책상 재정착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비[非]코호트 집단)으로 구분했다.²²⁾ 이 중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인정선이 해제되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위험이 여전히 높고, 유지할 경우에는 생명을 구할 현실적 가능성(real possibility)이 있다고 보았다.²³⁾ 반면 비코호트 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유지가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비

19)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2024] EWHC 312 (KB), paras. 1–2.

20) Ibid., paras. 2, 12–13.

21) Ibid., paras. 12–13.

22) Ibid., para. 31.

23) Ibid., paras. 31(a)–31(b), 32.

공개 조치로 인해 이들에 대한 위협 통보가 미루어지면 신원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출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 유출 당사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체임벌린 판사는 현시점에서는 기존 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²⁵⁾ 이는 슈퍼 인정선을 단순한 언론 억제 장치로 보지 않고, 재정착 및 보호조치를 완결하기 위한 시간적 보호막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보호막이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증거조사와 정기적 재검토 구조를 강화하였다. 먼저 체임벌린 판사는 위협평가가 국방부 내부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재정착자가 탈출할 때까지 슈퍼 인정선이 사실상 무기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²⁶⁾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임벌린 판사는 언론 측 증거, 특별 대리인의 비공개 신문 등을 통해 위협평가를 좀 더 엄밀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⁷⁾ 그리하여 슈퍼 인정선을 계속 유지하되, 국방부의 위협평가 검증을 위해 정부 측 증인을 소환함은 물론 언론사의 공식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 및 질문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²⁸⁾ 아울러, 그는 ‘법관이 슈퍼인정선을 발할 요건이 소멸하였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결정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명령을 해제하면 기존 결정이 보호하려고 했던 핵심 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 명령의 해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⁹⁾

2. Judgement 3: 비례성의 재검토와 ‘민주적 감시 부재’ 문제 제기

세 번째 판결에서 체임벌린 판사는 약 8개월 이상 유지해 온 슈퍼 인정선의 연장을 거부하였다. 이 판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슈퍼 인정선이 단순히 정보를 숨긴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위협평가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국방부의 정당화 논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방부는 처음에 4개월의 보호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놀즈 판사가 처음 금지 명령을 발한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심리일을 2023년 12월 1일로 정한 근거가 되었다.³⁰⁾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후에도 “break glass(탈레반이 유출 사

²⁴⁾ Ibid., paras. 31(c)–31(f).

²⁵⁾ Ibid., para. 32.

²⁶⁾ Ibid., para. 33.

²⁷⁾ Ibid., paras. 33–35.

²⁸⁾ Ibid., paras. 34–38.

²⁹⁾ Ibid., para. 37.

³⁰⁾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2024] EWHC 1220 (KB), para. 16.

실을 인지하는 시점)”가 도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내부에서 정책이 계속 변경되거나 지연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³¹⁾ 예컨대 2023년 11월에는 약 150명 수준이었던 재정착 대상군이 2024년 3월에는 약 2,300명(가족 포함 11,500명)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중대한 정책적 결정이 모두 비공개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고위험군을 제외한 약 80,000명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이주 조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³²⁾

이 결정에서 판사는 슈퍼 인정선이 가진 양면적 위협의 구조를 제시했다. 영국 국방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탈레반의 인지를 지연시키는 보호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³³⁾ 그러나 판사는 탈레반이 이미 유출 사실을 알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1) 2023년 8월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된 게시글이 4일간 노출된 사실, 2) 파키스탄에 있는 재정착 정책 대상자 약 1,800명에게 영국 국방부가 문자로 일부 사실을 통지한 점, 3) WhatsApp과 같은 SNS 커뮤니티에서 유출 사실이 널리 논의되었다는 언론 증언, 4) 마지막으로 현지 연락처(Person A)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보가 확산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거론되었다. 판사는 이를 종합해 탈레반이 이미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상당한 가능성(significant possibility)”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³⁴⁾

만약, 탈레반이 이미 정보 자체에 접근했다면, 슈퍼 인정선은 의도와 다르게, 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신·이동·연락처 변경 등 최소한의 회피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다. 반대로 탈레반이 아직 정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유지가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³⁵⁾ 결국 슈퍼 인정선은 약 20,000명의 재정착 대상군에게도 보호와 위협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판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위협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⁶⁾

특히 판사는 고위험군 외 약 80,000명의 비이전(non-relocation) 대상자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탈레반이 이미 정보를 확보한 경우 회피 조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break glass)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전 정보 없이 위협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정책 변경을 압박할 수 있는 공론장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나아가 이들은 결혼·출

31) Ibid., paras. 18–25.

32) Ibid., paras. 23–25.

33) Ibid., paras. 35–36.

34) Ibid., para. 39.

35) Ibid., para. 38.

36) Ibid., paras. 41–42.

산·거주·부양 등 삶의 중대한 결정을 치명적 위험을 모른 채 내려야 하므로 개인의 자율성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³⁷⁾

체임벌린 판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민주적 책임성과 공론 형성의 차단에 있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이것이 생명권 보장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공개적·의회적 검증을 거칠 때 더 정당하고 더 우월한 판단이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공적 자원 배분과 수만 명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이 비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³⁸⁾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체임벌린 판사는 슈퍼 인정선 유지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³⁹⁾ 판결 선고 21일 후 명령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였다.⁴⁰⁾ 더 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의 존재까지 숨기는 형태의 비공개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슈퍼 인정선은 그 자체가 공적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¹⁾

3. 항소심: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2024년 7월 26일 영국 항소법원은 슈퍼 인정선 해제를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항소법원은 문제 해결 방식을 ‘위험평가에 기반한 위험의 균형 비교’라는 틀로 재정의하고, 하급심이 이러한 비교형량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⁴²⁾

물론, 항소법원은 슈퍼 인정선이 민주적 감시를 차단한다는 하급심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심사의 기준이 슈퍼 인정선을 해제했을 때 초래될 위험과 계속 유지했을 때 잔존하는 위험을 비교형량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⁴³⁾ 국방부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슈퍼 인정선을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은 “현실적 가능성(real possibility)”에서 “거의 확실한(virtual certainty)” 것으로 급격히 상승한다고 판단했다.⁴⁴⁾ 항소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위험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르면 하급심의 해제 결정은 일정한 결함을 보여준다. 비(非)코호트 집단

³⁷⁾ Ibid., para. 45.

³⁸⁾ Ibid., para. 47.

³⁹⁾ Ibid., para. 53.

⁴⁰⁾ Ibid., para. 54.

⁴¹⁾ Ibid., para. 55.

⁴²⁾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2024] EWCA Civ 838, para. 6.

⁴³⁾ Ibid., paras. 53–61.

⁴⁴⁾ Ibid., para. 61.



의 위험 증가와 민주적 감시 기능의 상실이 비교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중대한 위험 즉, 수 천 명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위해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⁴⁵⁾

하급심은 명령이 해제될 경우,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의회나 정부가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연쇄적 작동이 실현되기 전에 탈레반의 공격 위험이 더 먼저 구체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⁶⁾ 항소법원은 비례성 심사의 기준 역시 다시 정리했다. 생명권이나 고문금지에 관한 권리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민주적 감시의 중요성이 인정 되더라도, 즉각적 생명권 침해가 입증되었다면 생명권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⁴⁷⁾

결국 항소법원은 기존의 하급심 결정이 지적했던 민주적 감시 부재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비공개명령을 해제할 만큼 위험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정보의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슈퍼 인정선은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위험 구조 속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슈퍼 인정선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고려하여, 최

⁴⁵⁾ Ibid., paras. 59–65.

⁴⁶⁾ Ibid., paras. 62–65.

⁴⁷⁾ Ibid., para. 77.

소 3개월마다 명령의 연장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⁴⁸⁾ 이러한 의무 부과는 금지 명령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V. Judgement 4: 슈퍼 인정선의 해제와 정상화

체임벌린 판사의 네 번째 판결은 2023년 9월 1일에 발령되었던 ‘콘트라문둠(contramundum)’ 슈퍼 인정선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결정은 서두에서 슈퍼 인정선이 2년 가까이 유지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원이 이 조치를 정당화해 온 근거를 되짚었다.⁴⁹⁾ 그동안 법원이 슈퍼 인정선을 유지한 근거는 일관되게 ‘탈레반이 정보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이를 획득해 신청자를 색출·추적·살해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가할 실질적 위험(real risk)이 있다’는 국방부의 위험평가에 기반해 왔다.⁵⁰⁾ 해제 결정의 전환점은 폴 리머의 정책 상황 검토 보고서(Policy Context Review, Paul Rimmer)였다. 리머 보고서의 핵심은 기존 위험평가를 대폭 하향 조정한 부분이다. 그는 해당 정보가 애초 예상만큼 널리 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⁵¹⁾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 탈레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탈레반이 이미 과거 정부의 행정 기록, 지방 유지 네트워크, 생체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데이터 유출이 추가적인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⁵²⁾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슈퍼 인정선을 유지했던 고등법원의 두 차례 결정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에 고려되었던 증거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⁵³⁾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임벌린 판사는 더 이상 슈퍼 인정선을 유지할 “방어 가능한 근거(tenable basi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탈레반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위험을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리머의 분석이, 기존 결정들이 전제해 온 위험평가의 논리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⁵⁴⁾ 또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슈퍼 인정선을 계

48) Ibid., paras. 80–81.

49)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2025] EWHC 1806 (Admin), para. 1.

50) Ibid., para. 3.

51) Sean Seddon, (2025, July 17), What we know so far about Afghan data breach,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79qy19071xo>; Holly Bancroft, (2025, July 15), Inside the £7bn secret scramble to save lives after MoD data breach,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superinjunction-afghan-evacuation-moD-data-breach-b2789204.html>

52)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2025, July 15),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Press Summary],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7/MoD-v-Global-press-summary-final.pdf>

53) Ministry of Defence –v– Global Media and Entertainment Ltd and others [2025] EWHC 1806 (Admin), para. 26.

54) Ibid., para. 26.



속 유지하는 것은 비례성에 반하며, 언론·대중의 알 권리와 민주적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간섭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⁵⁾

책임별린 판사는 전체 사건을 사실상 어둠 속에 두는 수준의 전면 비공개는 매우 한정적이고 긴박한 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리머 보고서가 초기의 위험평가와 다른 평가에 이르게 된 이유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이러한 예측적 위험평가에 법원이 어느 정도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초기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 미래를 대비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⁵⁶⁾

VI. 합의와 시사점

사상 초유의 영국 국방부 정보 유출 사건은, 국가안보, 생명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공개 조치가 어떠한 조건 하에 정당화되고, 또 언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를 매우 입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⁵⁵⁾ Ibid., para. 28.

⁵⁶⁾ Ibid., para. 33.

오늘날 기술의 발전은 편리성 이면으로 중요 정보의 우연한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확산 속도는 통제 불가능하며 그 파급효과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비공개 조치는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공개 조치가 항상 위험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슈퍼 인정선은 임시적인 보호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은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 증거 요구, 독립적 검증, 절차적 공개성이라는 규범적 조건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위협평가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 이러한 구체적 규범 조건을 무작정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비밀주의가 장기화될수록 위협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불신, 감시의 공백, 정보의 왜곡된 가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는 법과 민주주의 모두에게 구조적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헌법적 명제를 다시 확인시킨다. 위험은 자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유예는 영구적일 수 없으며 언제나 증거와 절차의 ‘마른 빛’ 아래 놓여야 한다. 고도화된 기술사회에서 비공개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개성, 사법적 검증, 그리고 자기 교정 능력을 갖춘 법질서라는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보호와 자유의 균형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